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7
		개정일자	2023.08.01
	폐기물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9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관련 법규 4. 용어의 정의 5. 책임과 권한 6. 업무 절차 7. 기록 관리 8. 관련 문서				
0	2023.08.01	ISO14001 인증 추진에 따른 최초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안전환경관리부 주 임	안전환경관리부 부 장		대 표 이 사
성 명	공 도 현	김 병 후		이 수 대
서 명				
일자(년/월/일)	2023/08/01	2023/08/01		2023/08/01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7
		개정일자	2023.08.01
	폐기물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2 / 9

1. 적용 범위

이 지침서는 당사의 사업 활동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 및 책임과 권한에 적용한다.

2. 목적

시공 및 공사관리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범위 및 책무를 명확히 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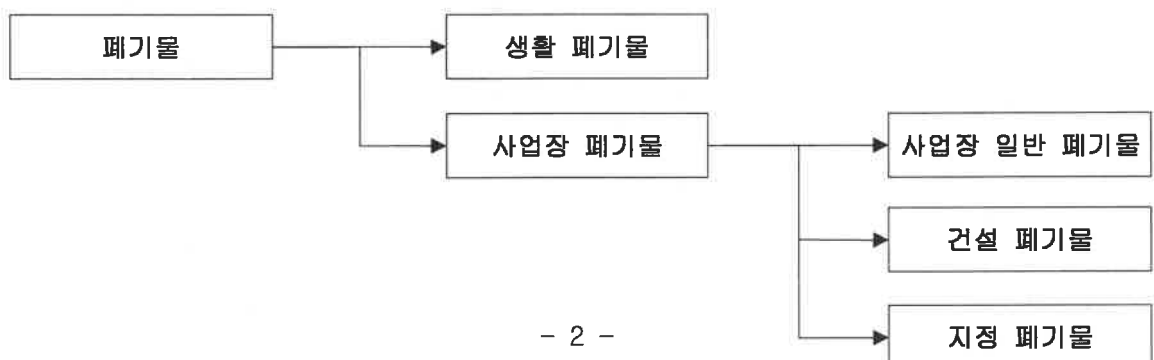
3. 관련 법규

- 3.1. 폐기물관리법
- 3.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3.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0.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
- 3.11.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 3.1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 증명업무 처리 지침

4. 용어의 정의

4.1. 폐기물

- 1)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7
		개정일자	2023.08.01
	폐기물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3 / 9

4.2. 생활 폐기물

폐기물 중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빈 병, 캔 등을 말한다.

4.3. 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4.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폐가전제품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5.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6. 지정 폐기물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7.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8.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 처리와 매립, 해양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4.9.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10.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 처리 시설과 최종 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11. 재활용

- 1)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2)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5. 책임과 권한

5.1. 현장소장

- 1) 폐기물 재활용계획서 승인
- 2) 가연성폐폐기물 소각로 설치 운영 승인
- 3)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수거 승인
- 4)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승인
- 5) 폐기물 수집 및 장소관리 승인
- 6) 폐기물 보관장소 확보 및 관리 승인
- 7)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보고 승인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7
		개정일자	2023.08.01
	폐기물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4 / 9

- 8) 폐기물 관련 인허가 신청 승인
- 9) 폐기물 보관용기 구입 승인

5.2. 총무(총무 업무 담당자)

- 1) 폐기물 재활용계획서 작성 및 실행
- 2) 가연성폐기물 소각로 설치 운영
- 3)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수거 운영
- 4)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 5) 폐기물 수집 및 장소관리 운영
- 6) 폐기물 보관장소 확보 및 관리
- 7)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보고
- 8) 폐기물 관련 인허가 신청 실행
- 9) 폐기물 보관 용기 구입 실행

6. 업무절차

6.1. 일반사항

- 1) 현장소장은 현장에 적용해야 할 환경관리 대상과 범위를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식별해야 한다.
 - (1) 해당되는 공사인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의 각 환경측면 개선계획
 - (2) 현장 실착공 후 시행된 **환경측면관리프로세스**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 (3) **법규관리 및 준수업무 규정**에 의한 첨부된 환경 **법규등록 대장**
- 2) 현장소장은 식별된 환경관리 대상측면에 대해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 (1) 현장 환경관리계획을 “**품질경영·안전보건경영·환경경영 매뉴얼**”의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
 - (2)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목표관리** 규정에 따른 환경 목표 추진계획 수립

6.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1) 현장소장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7
		개정일자	2023.08.01
	폐기물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5 / 9

신고대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현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신고시기 서식	- 1. ~ 2.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배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3. 에 해당하는 경우류 : 사업개시일 - 4. 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배출 예정일 3일전 까지 (공사의 경우 착공일을 말한다.)
서식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신고필증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변경 신고의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완료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월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않은 지정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 처리 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는 제외)
기록 보존	- 위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장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7
		개정일자	2023.08.01
	폐기물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6 / 9

6.3. 소각시설

1) 소각시설 설치 준비 및 인허가 사항 준비

- (1)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소장은 해당 지역에서의 소각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소각 기능 폐기물의 종류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 (2)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소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사용개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소각로 구매

- (1) 현장소장은 소각로 구매 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소각로 제작업자에게 폐기물처리 설치보고, 사용개시보고 등의 업무를 건적업무에 포함시켜 대행토록 할 수 있다.
- (2) 현장소장 및 현장 총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소각시설의 용량이 결정되나 가급적 100kg/hr 미만의 소각로를 구입하는 것이 유지관리 및 행정절차가 용이하다.

3) 인·허가

- (1) 현장소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2) 현장소장은 설치신고 필증을 접수하면 소각시설을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한다.

4) 소각시설 설치

- (1) 소각시설 설치바닥은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 위에 설치한다.
- (2)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폐법 제33조)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해야 한다.

5) 사용 개시

- (1) 현장소장은 소각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개시 신고서를 사용 개시 10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 (2) 사용 개시 신고서가 수리되면 투입해서는 안 되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유해 화학물질, 함유 폐기물을 철저히 선별하여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3) 소각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4) 소각잔재물은 지정 폐기물이므로 적법한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4. 건설폐기물 관리

1) 현장소장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1)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해야 하며 수거과정에서 섞이거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폐기물은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분리·수거해야 한다.
- (3) 폐기물 발생 작업자에게 해당 폐기물의 위해성 수거 방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전에 주지시켜 발생 및 수거 과정에서부터 적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4) 폐유 등 액체성 폐기물 발생 시 밀폐용기에 수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보관

- (1) 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으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하여야 한다.
- (2) 건설폐기물을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으로써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관량이 5t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다.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7
		개정일자	2023.08.01
	폐기물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7 / 9

- (3) 건설폐재류와 보관장소에는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양, 종류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1. 건설폐기물의 구분 :		2. 총보관량 :	톤
3. 보관장소의 면적 :	(㎡)	4. 허용보관량	톤
5. 보관기관 :	~	6. 관리책임자 :	
7. 보관시 주의사항 * *			
8. 운반예정 장소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규격 : 60cm x 40cm 이상)을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건설폐기물 재활용

- (1) 현장소장은 건설폐기물(특히, 건설폐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 파쇄, 선별 등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방안을 수립하고 재활용해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에 해당되는 건설폐재를 배출하는 현장소장은 매년 건설폐재의 재활용 계획(이하 “재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그 실적을 기록·보존한다.
 - 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총중량이 1,600t 이상인 토사
 - 체적의 합계가 500㎡ 이상 또는 총중량이 1,000t 이상인 콘크리트와 벽돌
 - 체적의 합계가 200㎡ 이상 또는 총중량이 400t 이상인 아스팔트콘크리트
 - 체적의 합계가 50㎡ 이상 또는 총중량이 30t 이상인 건축 폐목재

4) 철거 및 위탁처리

- (1) 소각처리 시설이 설치된 현장은 소각 가능한 폐기물만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탁 처리를 해야 한다.
- (2) 현장소장은 현장 지역의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여 폐기물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능한 당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 원도급사에서 추천한 업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업체
 - 수집·운반업 이외의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 처리업 및 비계 구조물 해체업 등의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7
		개정일자	2023.08.01
	폐기물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8 / 9

6.5. 지정폐기물 관리

현장소장은 지정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 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 1)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 2)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상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성상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 3) 지정 폐기물은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한다.
- 4) 지정 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빗물·지표수 등 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한다.
- 5) 지정 폐기물의 보관기간은 **45일** 이하로 한다.
- 6) 지정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7) 지정 폐기물 보관 표지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			
1. 폐기물의 종류 :		2. 총보관량 :	톤
3. 관리책임자 :		4. 보관기관 :	~ (월간)
5.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		
	운반 시 :		
	처리 시 :		
6. 운반(처리) 예정 장소 :			

※보관창고에 부착할 때는 출입문에 부착한다.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규격 : 60cm x 40cm 이상(드럼통 소형 용기에 부착할 때는 1/4)

※표지 색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 8)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를 하되, 배출 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될 때는 매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처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9)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I-827
		개정일자	2023.08.01
	폐기물관리 지침서	개정번호	0
		쪽 번호	9 / 9

- 10)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하여야 한다.
- 11) 지정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 12)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3) 현장소장은 보관용기를 준비하여 보관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보관장소로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 14) 재활용 및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은 시, 구, 군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군, 구청장에게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를 하되, 배출 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될 때는 매 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 까지, 나머지 폐기물 처리실적은 폐기물처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6.6. 환경점검

- 1) 현장소장은 현장의 환경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정상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현장 관리자(총무)를 선정하여 환경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현장 관리자(총무)는 매일 1회 순회 점검을 환경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 경우 별도 기록은 작성하지 않고 부적합사항 발견 시 **지속적개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기록한다.
- 3) 발견된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지속적개선 규정**에 따라 부적합을 처리하고 관련 조치란에 부적합보고서 번호를 기록한다.
- 4) 우기 혹은 특별한 작업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 점검을 상기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점검결과란 중 빈칸에 기록한다.

7. 기록관리

- 7.1. 본 규정과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문서화된 정보관리 규정(HW-QESHP-751)에 따른다.

기록문서	관리부서	양식번호	보존기한
환경 점검표	안전환경관리부	HW-환경-003	3년

8. 관련문서

- 8.1. 목표관리 규정
- 8.2. 환경운영관리 규정
- 8.3. 법규관리 및 준수의무 규정
- 8.4. 환경측면 영향평가 규정
- 8.5. 지속적개선 규정